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4. 12 선고 2021가단11571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심지영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혜

변 론 종 결 2023. 2. 1.

판 결 선 고 2023. 4. 12.

주 문

1. C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8. 4. 20.자 증여계약을 301,709,33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1,709,3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C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8. 4. 20.자 증여계약을 421,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내외 의약품 도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C은 ‘D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C은 원고로부터 약품을 공급받고 일부씩 결제하는 방법으로 원고와 거래해오고 있었다.

나. 원고 및 원고와 거래하는 약사들인 C, E, F 양 측 대리인 G의 촉탁으로 2014. 2. 6. 다음과 같은 공정증서들(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이 각각 작성되었다.

1) 법무법인 H 2014년 제192호

채권자 원고, 채무자 C, 연대보증인 E, F

물품대금 8억 원

변제기한과 방법 2014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1회에 걸쳐 매월 15일에

7,000만 원씩 분할 지급, 나머지 3,000만 원은 2015년 1월 15일에 지급

2) 법무법인 H 증서 2014년 제193호

채권자 원고, 채무자 E, 연대보증인 F, C

물품대금 6억 원,

변제기한과 방법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2회에 걸쳐 매월 15일에 5,000

만 원씩 분할 지급

3) 법무법인 H 증서 제2014년 제194호

채권자 원고, 채무자 F, 연대보증인 E, C

물품대금 2억 원

변제기한과 방법 2014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1회에 걸쳐 매월 15일에

1,800만 원씩 분할 지급, 나머지 200만 원은 2015년 1월 15일에 지급

다. C은 2018. 4. 20. 배우자인 피고에게 군포시 I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증여').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6. 7.

12. 채권최고액 346,8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K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었는데, 이 사건 증여 이후인 2019. 5. 15. 위 근저당권이 해지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2018. 4. 20. 기준 약품대금채권 1,482,097,733원,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합계

1,600,000,000원은 이 사건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피고

가) C, E은 G에게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는 무효이다.

나) 2014. 2. 6. 당시 C에게 8억 원의 약품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다. 설령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선행채무를 먼저 변제하는 방법으로 매월 수억 원씩 변제해왔기 때문에 이 사건 증여 당시에는 전부

변제되었다.

다) 이 사건 각 공정증서상 채무는 물품대금채무이므로 마지막 변제기인 2015. 1.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존재 여부

1)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효력

가) 공정증서정본의 공증인 직접 작성부분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나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촉탁 대리인으로 기재된 자가 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점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195 판결).

일반적으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 문서의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단 문서의 내용 중 일부가 사후 보충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다음에는 그 백지부분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사실은 그 백지부분의 기재에 따른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나) 증인 G의 증언,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을 종합하면, G은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1) C과 E, F(이하 ‘C 등’)는 2014. 2. 3.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G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각 위임장에는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법무법인 H 공증실에서 다음 사항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아래에 기재된 사항을 허락합니다.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를 승낙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임장 중 위임인 인적사항 란의 필체는 수임인 란 및 채무 내용이 기재된 란의 필체와 다르고 위임인들 각각의 필체도 서로 다른 것으로 미루어 위임인들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C 등이 위임장의 이름을 쓰는 란에 직접 썼다고 진술하였다.

(2) 각각의 위임장에는 2014. 1. 28. C 등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3)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한 법무법인에서는 2014. 2. 7.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 사실을 알리는 통지서를 C, E, F에게 각각 보냈다.

(4) 피고는, 위임의 범위에 대하여 합의가 없었고 C 등은 채무 내용이 백지인 상태에서 위임장을 작성하였으며, 그 후 G이 임의로 보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C 등에게서 위임장을 받을 당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 등이 연대보증 사실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채무자인 C 등으로서는 공정증서에 담길 채무의 내용이 주된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점, G도 공정증서의 채무 금액은 원고 회사에서 정해서 C 등에게 얘기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C 등이 작성한 위임장 하단에는 위임하는 권한의 내용 중 하나로 “연대보증을 수락하는 일”이 기재되어 있고, 연대보증이 아니라면 세 개의 위임장을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G의 증언만으로 C 등이 백지상태에서 위임장에 날인하였고 G이 사후에 보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변제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가) 증인 G은 C 등이 공정증서 위임장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1/4씩 결제를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3/4 부분이 너무나 잔고가 과다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거래를 위해서는 담보를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F 약사에게 요청을 했고, F가 C, E 약사들과 협의해서 이 부분을 수용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정증서상 채무액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당시까지 발생한 물품대금이 맞는지에 대하여 ‘물품대금이고요. 잔고의 1/4이 매달 결제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결제 안 되는 부분이 상당했습니다. 각 약국별로 계속적으로 남게 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물품대금채무는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미결제 물품대금으로 남아있고 앞으로 매월 결제되더라도 1/4씩만 결제되는 결과 완전히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추산해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앞서 본 결제 방식에 따르면 C 등이 결제하는 금액은 먼저 발생한 물품대금 변제에 먼저 충당됨을 알 수 있는데,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C 등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후 각 공정증서상 채무액(C 8억 원, E 6억 원, F 2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E, F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제외하고도 918,369,574원, C K카드로 결제한 금액만 하여도 약 174억 2,840만 원)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정증서 작성 후 공급이 계속됨에 따라 새로운 물품대금채무가 계속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 당시 각 공정증서상 채무는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공정증서 작성 이후 거래에 의한 물품대금채권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2009. 1.경부터 2021. 7. 31.까지 계속 원고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약품대금은 납품받고 3~4개월 후 분납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G의 증언도 같다. D약국 장부(을 제3호증)에 의하더라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미수금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D약국 장부상 2018. 4. 25. 기준 미수금은 78,475,009원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2018. 4. 20.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에 기한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와 C 사이의 과거 거래기간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가 약품을 계속 공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새로운 물품대금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로 2021. 7.경 거래가 종료되기까지 물품대금채권이 계속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 당시 이미 발생한 물품대금채권 및 이후에 발생한 물품대금채권도 이 사건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피고는 변제 가능성이 충분했으므로 장래 물품대금채권 성립의 개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회수가능성에 따라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3.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C의 책임재산인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결혼 전 모아놓았던 돈과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을 합하여 구입하면서 명의만 남편 C로 해둔 피고의 고유재산이고 이 사건 증여는 피고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조치였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 출처가 피고 또는 피고의 부모님이라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으므로, C의 책임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증여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는지

군포시장, 마산회원구청장, 양산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달리 적극재산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다. 을 제8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은 415,000,000원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K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원금은 289,000,000원이었고(2022. 6. 10.자 K 주식회사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D약국 장부상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78,475,009원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중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기능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로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사해의사

2009년경부터 계속 원고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으며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C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또한 C의 공동담보 감소를 인식하였다고 추정된다. C이 꾸준히 일부 변제를 해왔다는 점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치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 원고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해의사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공동담보 부족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증여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K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중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을 제8호증의1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10. 이 사건 부동산 거래금액은 600,000,000원이고, 말소 당시 K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89,290,662원(2022. 6. 10.자 K 주식회사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변론종결일 현재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7억 원 내지 8억 원에 이른다(2022. 11. 14.자 준비서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 가액 301,709,338원(= 600,000,000원 - 298,290,662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증여는 301,709,33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1,709,3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림

별지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경기도 군포시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저층

16층아파트

1층 252.30㎡

2층 441.16㎡

3층 441.16㎡

4층 435.56㎡

5층 435.56㎡

6층 435.56㎡

7층 435.56㎡

8층 435.56㎡

9층 435.56㎡

10층 435.56㎡

11층 435.56㎡

12층 435.56㎡

13층 435.56㎡

14층 435.56㎡

15층 435.56㎡

16층 186.48㎡

지층 391.5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94.4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군포시

대 44847.5㎡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44,847.5분의 46.219

